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201298(본소), 2023가단20130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임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23. 5. 2.

판결 선고 2023. 6.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5,760,7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D사무소'라 한다)를, 서울 서초구 E 지하 사무실에서 F부동산중개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F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0.부터, G는 1999. 12. 1.부터, H은 2015. 2. 10.부터 각 원고에게 고용되어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다(이하, 피고, G, H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원래 F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팀(이하 '중개팀'이라 한다)과 부동산개발컨설팅팀(이하 '컨설팅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7. 7. 무렵 중개팀과 컨설팅팀이 사업장을 나누어 이전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은 중개팀을 운영하고자 2017. 7.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 계약서

원고와 피고 등은 서울 서초구 내 단체 소속 F사무소를 공동 사업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음 -

1. F사무소의 지분소유권 100%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등이 각각 25%를 소유한다.
 2. 상기 1항의 지분비율로 권리 및 책임을 가지며 의사결정시 지분 비율 다수로 결정한다.
 3. 2017. 9. 1. 전에 운영하던 F사무소의 모든 문제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사업과 자금운용은 원고와 피고 등이 모두 참여하여 투명하고 신의원칙에 의해 행한다.
 5. 상기 원고와 피고 등 중 지분에 대한 소유 변동이 발생할 시 사전에 미리 각각에 통보하고 상의하여 결정한다.
 6. 원고를 제외한 피고 등이 각각 1,000만 원 사업자금을 부담한다.
 7. 우선 서울 서초구 J건물 1층 전면을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계약하고 F사무소를 이전한다.
- 라. 원고, 피고 등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서울 서초구 J건물 1층 K호에 관하여 2017. 7. 26.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8. 8. 22. 임대차면적을 추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9. 16.부터 2019. 9. 15.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F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등은 위 기간 동안 D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31. D사무소에서 퇴직한 후, 2018. 6. 1.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F사무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바. 피고 등은 2019. 1. 9.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이유로 원고를 동업계약에서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1.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F사무소 대해 원고가 운영을 하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피고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때로는 화를 내며 독단적으로 하였고, 그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에 대해 그동안 적자라는 내용과 달리 흑자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나 갑자기 F사무소의 사업장에 찾아와서 입출금 내역서를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폭언하며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준 사실
2.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간곡히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퇴직금 책정에 이견이 있다면서 합의 내용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3.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자 오히려 피고 H에게 문자를 보내서 원고 자신을 배제하면 형법상 배임죄라며 협박을 한 점, 결국 이는 운영상 무언가 트집을 잡아서 원고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퇴직금 협상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사실
4. 투명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나 실제 원고가 운영할 당시에는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동업자들을 무시하고 본인 위주로만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망과 불신을 가져온 사실
5. 그전 근무지인 D사무소에 원고 외 나머지 동업자를 찾는 고객이 전화를 하면 그만두었다며 연결도 해주지 않은 사실
6. 원고는 D사무소의 대표님으로서 상기 1항에서 5항까지 여러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상태에서 F사무소의 운영상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상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퇴직금 및 미지급금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

사. 피고 등은 2019. 1. 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제명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9. 1. 10. 위 내용증명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였고, 피고 등은 2019. 1. 1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피고 등은 2019.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53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장부 등 열람등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입출금내역서와 통장사본을 교부받은 후 2019. 5. 7.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원고는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39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결정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76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07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2.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23다202815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4.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차. 피고 등이 D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피고 H 9,497,846원, 피고 B 19,998,878원, 피고 G 28,035,247원이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37 사건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고 등의 퇴직금 합계 57,531,9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25.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84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22도505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0. 11.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카. 원고는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803 사건에서 '2017. 9. 19.부터 2017. 11. 2.까지 6회에 걸쳐 F사무소 신한은행 계좌에서 합계 10,211,9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신용카드 대금 4,982,272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회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4. 22.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22도5057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7.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 19, 2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동업계약 무렵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에서 피고 등의 투자금 1,0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위 수수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위 공제 합의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에서 피고 등의 투자금 1,0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등이 2017. 8. 29.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각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등이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를 원고가 30%, 피고, G가 각 30%, H이 10%로 배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수수료 합의'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 등이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에서 피고 등의 투자금 1,0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금 공제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금 공제 합의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합계 90,367,696원이다.

2017. 7. 20.	L	34,618,600
2017. 8. 24.	M건물	18,460,910
2016. 9.	N건물	3,000,000
○건물	12,040,000	
2016. 10.	주택, 학원, 상가	2,150,345
2016. 11.	주택, 학원, 상가	6,650,128
2016. 12.	주택, 학원, 상가	490,909
2017. 7.	주택, 학원, 상가	3,927,272
2017. 8.	주택, 학원, 상가	4,053,352
2017. 10.	주택, 학원, 상가	487,636
2017. 11.	주택, 학원, 상가	3,043,272
2018. 1.	주택, 학원, 상가	1,445,272
	90,367,696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이미 지급한 34,835,000원과 피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위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5,532,6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 구입비 228,03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무용품구입비 228,0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 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 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6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가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D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 구입비 228,030원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설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를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사전에 그 지급기준과 비율이 약정되어 있고,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액 역시 각 해당 중개 이후 일회적으로 지급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 점, ③ 상업용 빌딩 중개 역시 '부동산 중개'라는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그 이행기로 볼 수 있는 위 각 수수료지급일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각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30. 반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상업용 빌딩 중개 수수료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5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었을 뿐인을 제23호증, 그 차용금 용도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사유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체금'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일 뿐인 을 제24호증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정훈